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77호 2020. 7. 23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59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1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92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677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59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07. 23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 - 9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7월 16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 - 구랑항 선착장 정비사업(선착장 1개소)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-9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857㎡(직접 : 159, 간접 : 698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7월 16일 ~ 2035년 7월 15일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# 사 천 시 공 보

제677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923호

##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『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7월 23일

## 사 천 시 장

1. 목 적 :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농경지 등 재해를 보호하기 위함
2.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3. 공고방법 : 사천시청 홈페이지, 공보게제 및 지역일간지
4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

저수지명	위 치	제 원			관리자	지정사유	비고
		총저수량 (천 <sup>3</sup> m)	길이 (m)	높이 (m)			
신복하저수지	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221번지 일원	20.3	114	8	사천시장	D급 (정밀안전진단)	
노천저수지	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1101번지 일원	27.0	100	12			
구룡저수지	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606-32번지 일원	8.08	50	12	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677호

## 6. 의견제출 방법

가.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방문 및 우편 : (52539)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(사천시청 건설과)
- 전화 : 055)831-3278, 팩스 : 055)831-6035

나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77호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 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
의견제출 내용	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	
	의 견	
	기 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사 천 시 장 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